

〈 의료법 개정에 따른

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제도의

주요 변경내용 〉



2012. 05

대한치과의사협회
KOREAN DENTAL ASSOCIATION

차 례

1. 신 고 - - - - - 1 ~ 3
2. 보수교육기관 - - - - - 4
3. 보수교육 면제 · 유예 대상 - - - - - 5 ~ 6
4. 기타사항 - - - - - 6

< 의료법 개정에 따른

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제도의 주요 변경내용 >

- 2011. 4. 28 의료법 개정에 따른 모든 의료인은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른 방법과 절차 그리고 근거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 지침 및 2012. 5.12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에서 개최된 보수교육 위원회 및 각 지부 학술이사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

① 신고

1. 신고대상

- 대상자 : 모든 의료인(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·간호사)
 -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
 -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,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(재교부)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

2. 신고조건

- 매 3년마다 지난 3년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내용을 근거로 신고를 받음
 - 보수교육 미이수시에는 신고가 반려됨
 - 미신고시에는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됨

3. 신고주기 및 기간

- 1) 2012. 4.28 이전 면허 취득자(일괄신고 실시 대상자)
 - ① 최초신고 : 2012. 4.29부터 2013. 4.28까지
 - ⇒ 2011년 이수한 보수교육 점수를 근거로 신고
 - * 2011년도 미이수자는 2012년도에 개설된 보수교육 8점을 이수한 후 이를 근거로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아 신고 가능.
다만, 이 경우 다음 신고시에 필요한 2012년도분 보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.
⇒ (2011년도분 : 8점 , 2012년도분 : 8점)

② 이후 신고는, 최초신고에 따라 변화하며
 지난 3년간의 보수교육 점수를 근거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
 12월 31일까지 신고

③ 차기신고 기간 예시

- 2012. 4.29 ~ 2012.12.31에 신고하였으면 차기신고는
 2015. 1. 1 ~ 2015.12.31중에 신고
- 2013. 1. 1 ~ 2013. 4.28중에 신고하였으면 차기신고는
 2016. 1. 1 ~ 2016.12.31.중에 신고

면허 발급 연도	최초 신고 연도	차기 신고 연도
2012.4.29~2012.12.31	2015	2018
2013.1.1~2013.12.31	2016	2019
2014.1.1~2014.12.31	2017	2020
}	}	}
X	(X+3)	(X+6)

* 면허를 2013. 3. 1에 취득한 자는 3년후인 2016. 1. 1 ~ 12.31중에 신고

<의료인의 신고 연도 분류>

대상자	신고 연도
○최초 신고를 2012년(4월 29일 ~ 12월31일)에 한 자 ○면허를 2012, 2015, 2018, ...년에 발급받은 자	2015, 2018, 2021, ...
○최초 신고를 2013년(1월 1일 ~ 4월28일)에 한 자 ○면허를 2013, 2016, 2019, ...년에 발급받은 자	2016, 2019, 2022, ...
○면허를 2014, 2017, 2020, ...년에 발급받은 자	2017, 2020, 2023, ...

4. 근거법령

<의료법시행령>

제11조(신고)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

제8조 도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

법률 제10609호(2011.4.28) - 부칙 제2조제1항

제2조(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·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·조산사회 및 간호사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에 위탁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5. 유의사항

- ① 일괄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, 일괄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 진행
 - *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, 의견제출기회 부여 →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→ 도달시점부터 면허효력 정지
- ②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곧바로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음
- ③ 일괄신고 대상자가 일괄신고 기한이 지나서 추가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, 20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면제·유예 확인서 제출
 - * (예) 1990년도 면허 발급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2015년도에 최초로 신고할 때, 2011년도~2014년도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·유예 확인서 필요

② 보수교육기관

1. 보수교육기관의 범위

- ① 의료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의 “지부”
- ② 치협 정관에 따라 설치된 치의학 분야별 “전문학회” 및 “전문단체”
- ③ 치과대학 ·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
- ④ 수련치과병원
- ⑤ 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
- ⑥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

2. 근거법령

<의료법시행규칙>

제20조(보수교육) 제20조(보수교육)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.

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- 1.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(이하 “지부”라 한다)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 · 치의학 · 한의학 · 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
- 2. 의과대학 · 치과대학 · 한의과대학 · 의학전문대학원 · 치의학전문대학원 · 한의학전문대학원 · 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
- 3. 수련병원
- 4. 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
- 5.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

⑤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③ 보수교육 면제·유예대상

1. 보수교육 면제대상 범위

○ 의료법 개정이전과 달리 보수교육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

* 관련조항 :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제6항

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.

1. 전공의
2. 의과대학·치과대학·한 의과대학·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
3.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
(※ 재발급자는 제외함)
4.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

2. 보수교육 유예대상 범위

① 보수교육을 유예 받을 수 있는 범위

* 관련조항 :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제7항

1.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
2.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보수교육을 유예신청에 의거 유예대상자 신분이었다가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, 과거 유예되었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

3.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되는 경우

① 연간 8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, 8점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함

* (예) 2014년에 7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, 미이수 처리되어 2015년에 추가로 8점을 이수해야 함(1점 추가 이수로는 2014년 보수교육 이수처리가 불가능하며, 2015년도에는 총 16점 이수 의무 발생)

②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, 유예 신청한 경우 연간 8점을 기준으로 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

③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(환자진료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하게 된 경우),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‘보충 보수교육’ 을 이수하여야 함

* 보충 보수교육의 기산점은 2011년부터 기산

* (예)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2012년부터 10년간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했다면,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88점의 보수교육(8점×11년)을 이수한 후 진료 현장에 복귀해야 함

4 기타 사항

1. 면허발급연도 확인방법

①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(lic.mohw.go.kr)

② 확인절차

·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⇒ 온라인 면허조회 ⇒ 종별 확인 후, 주민등록번호 입력 ⇒ 면허번호 발급연도 확인

2. 신고 방법 및 절차

① 신고방법

-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「면허신고시스템」에 치과의사 개인이 직접 접속하여 신고함

※ 현재 협회에서 면허신고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므로 추후 완성되면 신고방법 등과 함께 안내할 예정

② 신고방법에 대한 예외

*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의료인이 지회 또는 분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지회 또는 분회가 대신 입력 허용